## (15-025) ○○○ 오피스텔 공사장 타워크레인 꺽임 사고

공사명	○○○ 오피스텔 신축공사			
사고일시	2015년 11월 22일(일) 11:49분경		기상상태	흐림
소재지	경남 거제시 옥포동	사고 종류	꺽임	
구조물 손실	-	인적피해	-	
장비 손실	타워크레인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 🔾 ),	해당없음( )

#### Ⅱ 공사개요

o 공사종류: 업무시설(오피스텔)

o 연면적: 10,382m²

o 규모: 지하 2층/지상 20층

### 사고개요

#### ② 사고경위

o 타워크레인(L형, GHD-4015, 2.9톤)으로 지하터파기 흙막이 공사의 H파일을 양중하던 중 양중 와이어 파단으로 타워크레인 상부 마스터와 메인집 연결부위가 꺽여 25M 도로 맞은편 건물(529-13) 옥상에 걸쳐짐.

#### ③ 사고원인

o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져 갑작스런 반력이 작용하여 크레인 상부 마스터와 메인집 연결부위가 파단된 것으로 추정.

# 재발방지 대책

- o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(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)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o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 최대의 정격하중을 건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실시할 때에 시험하중에 맞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o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(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)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o 고정된 구조물의 제거 또는 철거 작업 등에 이동식 크레인 사용 금지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 전경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(통행 재개)